국회토론회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일시 : 2014년 3월 19일 수요일 오후 1시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김현, 국회의원 장하나

공동주최 :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무기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폭력평화훈련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의친구들)

ㅣ 프로그램 ㅣ

1부

13:30 ~ 13:40	여는말씀	
13:40 ~ 14:00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개정안 소개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4:00 ~ 14:30	한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은 바레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알라 쉬하비 Ala’a Shehabi 빌 마크작 Bill Marczak 바레인워치 활동가

2부

14:30 ~ 14:50	토론1 – 이길찬 경감(경찰청 생활질서과)	
14:50 ~ 15:10	토론2 -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	
15:10 ~ 15:30	토론3 – 박승호 활동가(무기제로)	
15:30 ~	질의응답	

ㅣ자료집목차ㅣ

1. 인사말 - 김현 의원 / 03

2. 인사말 - 장하나 의원 / 04

3. 발제1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개관(황필규) / 06

4. 발제2 – 한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은 바레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알라 쉬하비/빌 마크작) / 12

5. 토론1 - 이길찬(경찰청 생활질서과) / 20

6. 토론2 -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23

7. 토론3 - 박승호(무기제로 활동가) / 29

8.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ㅣ인사말ㅣ

대한민국 국회의원 김 현

안녕하세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 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의 토론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과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토론회를 위해 멀리 바레인에서 오신 알라 쉬하비 박사님 일행께 환영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11년 뉴스를 통해 '아랍의 봄'을 접했을 때, 중동의 변화에 온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이면에는 희생도 뒤따랐음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998년 민주정부가 들어서며 무최루탄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염병도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국가의 인권보호 정책에 시민이 화답한 것입니다.

지난 3년간 바레인에서 최루탄 사용으로 최소 39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 최루탄을 바레인에 수출한 나라가 바로 30년 전 지금의 바레인과 같은 상황에 있던 대한민국이었다는 보고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문득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87년 6월의 그 이름, 이한열 열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도 Made in Korea 최루탄이 세계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한열 열사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어쩌면 제가 느끼는 그 먹먹함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오늘의 토론회가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개정을 위한 현명한 나침반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 관계자분들과 바쁜가운데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바레인의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알라 쉬하비 박사님과 동료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ㅣ 인사말 ㅣ

민주당 국회의원 장하나

오늘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방안〉을 논하는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일, 터키에서 최루탄을 머리에 맞아 9개월째 사경을 헤매던 15살 소년이 사망했다는 비보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최루탄을 대량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슬픔을 넘어 부끄러움과 죄스러움까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극은 터키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바레인에서 최루탄으로 인한 사망자가 39명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레인 정부가 시위 진압에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최루탄을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국가 역시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산 최루탄은 이미 바레인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는 것을 현지 활동가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인구가 120만 명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에 지난 3년간 한국의 한 업체가 총 150만 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는 것도 경찰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 최루탄 수출의 근거법이 되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상 민수용 최루탄을 수출할 때에는 생산업체 소재지의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은 수출 허가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바레인과 같이 최루탄 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국가로의 수출이 사실상 정부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지며, 이는 당연히 무기의 이전 시에도 적용됩니다. 수입된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에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것은 사실상 그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총단법" 개정을 통해, 수출 허가권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이 수입국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총포 등의 수출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무기 수입에 제재를 받는 국가가 관련 법규가 허술한 인접국이나 동맹국을 경유해 무기를 재수출 또는 불법 전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므로, "총단법" 개정안에는 총포 등이 수입국에서 제3국으로 재판매(또는 전용) 될 수 없다는 금지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터키와 바레인에서 벌어진 일과 같이 한국 정부와 기업이 타국 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저는 국회에서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바레인에서부터 먼 길을 오신 국제 NGO 바레인워치(Bahrain Watch) 대표단 여러분들께도 죄송스러움과 연대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제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개관(황필규)

원고2_발제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개관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 개정법률안의 배경

터키에서 최루탄으로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1] 그동안 한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이 터키의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사용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어왔다.[2] 바레인에서는 정부가 최루탄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바레인에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한국으로 알려졌다.[3] 한국 정부는 “바레인 정세가 불안한데다 최루탄으로 현지인이 숨졌고 인권단체의 항의가 나와” 최루탄 수출을 수출 유보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4] 그러나 한국 업체가 여전히 터키당국 등에 상당한 양의 시위 진압장비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5]

대법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상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6] 경찰청은 위 대법원 판결상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의 법적 성격이 총단법상의 모든 인・허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7]

총포 등의 수출과 관련하여 현행 총단법 제9조 제4항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이미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의 일시금지 또한 제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은 “총단법은 국내법으로서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국제적 인권상황을 동 법령으로 규제할 수 없다.”[8]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 수출허가 혹은 허가 후 규제사유가 되는 “공공의 안전”을 국내 공공의 안전으로만 해석하고 있다.[9]

---

1) 연합뉴스 2014. 3. 12.자 “터키, 최루탄 맞은 소년 사망에 주요 도시서 시위.”
2) 연합뉴스 2013. 9. 14.자 “앰네스티 "터키에 시위진압장비 수출 중단해야.””
3) 시사IN 2014. 1. 8.자 “한국산 최루탄에 눈물짓는 바레인.”
4) 연합뉴스 2014. 1. 8.자 ““韓 '유혈 진압 논란'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 중단.””
5) 프레시안 2014. 2. 24.자 “박근혜 정부에 보낸 앰네스티의 10가지 권고.”
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036 판결
7)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2013. 9. 27.자 터키 최루탄 무기수출 관련 질의서 및 2013. 10. 15.자 바레인 최루탄 수출 관련 질의서에 대한 경찰청의 2013. 10. 23.자 답변서.
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2013. 9. 27.자 터키 최루탄 무기수출 관련 질의서 및 2013. 10. 15.자 바레인 최루탄 수출 관련 질의서에 대한 경찰청의 2013. 10. 23.자 답변서.
9) 경찰청의 이러한 답변과는 달리 방위사업청의 경우 “수출허가 심사시 외교적 민감성 및 해당 국가의 국내정세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인권규약준수 등에 대한 해당국 정부의 서약을

위와 같은 경찰청의 해석에 따르면 수출된 총포 등의 최종사용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의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수출허가의 전후에 있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수출허가의 법적 성격을 화약류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의 법적 성격과 동일시하는 것이나, 공공의 안전을 국내 공공의 안전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총단법은 판매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객관적인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총단법 제6조 및 제25조), 수출허가는 각각의 수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관련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이라는 일반조항을 허가불허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총단법 제9조 제1항에서 제4항) 양자의 법적 성격을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총단법이 수출의 허가, 그 허가의 일시금지 또한 제한 사유로 공공의 안전을 들고 있는 이상 공공의 안전을 국내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총포 등의 국외 유출이 국내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수출된 총포 등을 관리 혹은 규제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인 공공의 안전을 수출에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대한 인권침해의 명백한 위험 등으로 그 제한의 사유로 명료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수출허가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

(1) 헌법 및 국제법상의 요청

헌법은 전문에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함을 규정하여 평화주의의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10] 또한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다(헌법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11]

최루탄의 경우만 보자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CWC) 제1조 제5항은 “각 당사국은 폭동진압작용제를 전투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라목에서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규정하여 그 성격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최루탄 등 폭동진압작용제가 그 고유의 목적이 아닌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화학무기 관련 협약과 법률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제출토록 하고 있고, 향후 국제무기거래조약 비준과 연계하여 국제인권 위반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협의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2013. 9. 26.자 터키 최루탄 무기수출 관련 질의서 및 2013. 10. 15.자 바레인 최루탄 수출 관련 질의서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2013. 10. 31.자 답변서.

10) 양건 외,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 (헌법-총강 및 기본권 부분)』 (2007), p.110.

11)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한편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채택을 위한 2013년 4월 유엔 총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바 있고, 2013년 6월 3일 같은 조약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이 재래식 무기의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이전을 규율함으로써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권 침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동 조약의 국내 발효를 추진하여 조속한 발효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12)]

조약에 대한 서명은 조약의 취지, 목적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의 표명을 의미하고 서명국은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게 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가 진다(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8조). 무기금지조약은 민간에 대한 공격 등에 해당되는 거래 인지시 거래를 불허하도록 하고 있고, 무기거래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에 기여 가능성의 압도적 위험(overriding risk)이 존재한다는 부정적인 결과 도출시 수출을 불허 하도록 하고 있다.[13)]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중대한 인권침해, 즉 국제인권법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수출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을 때, 군수용이 아닌 총포 등이 동일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되는 경우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국내에서의 총포 등의 규제 및 사용

수출이 아닌 국내에서의 총포 등의 제조, 판매 등과 관련하여 공공의 안전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가 가능하다.

총단법 조항	조치
제13조 제2항	소지 불허 (재량)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제3항	화약류의 사용불허 (기속)
제20조 제2항	화약류의 폐기중지 (재량)
제21조 제2항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불허 (기속)
제38조 제3항	제조업자의 위해예방규정 변경 (재량)
제44조 제1항	제조소・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 출입,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 검사 또는 관계자 질문 (재량)
제45조 제1항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허가 취소 (기속), 영업 정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재량)
제47조 제1항 제1호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양도・양수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재량)

12) 외교부 2013. 6 4.자 보도자료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우리나라 서명.”
13) 외교부,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개요』 (2013. 6.3.)

제47조 제1항 제2호	제조업자・판매업자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재량)
제47조 제1항 제4호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보관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재량)
제47조 제1항 제5호	제조업자・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재량)

수출허가에 대해 국내에서의 위와 같은 감독과 규제가 용이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그 수출허가가 초래할 심각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표방하는 총단법의 취지상 당연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헌법 및 국제법의 취지상 국내에서는 공공의 안전유지가 중요하지만, 외국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포 등의 수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접근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최루탄의 경우 2012년 9월 기준 전국적으로 경찰 무기고에 저장되어 있는 최루탄(발사기용, 투척용)은 54만발 이상이고, 노후된 훈련탄, 추진탄, 다연발탄 23만발 등을 포함할 경우 77만발 이상을 경찰이 보유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중에서 3만4천발 가량과 노후된 훈련탄, 추진탄, 다연발탄 등 23만발을 합한 총 26만 4천발을 2912년 중 폐기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14] 또한 경찰청은 "기동부대 및 인원은 감소되었으나 보유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필요 이상 보유" 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고, 2011년 경찰은 그동안 유해성 논란이 일던 CS최루액을 전량폐기한 바 있다.[15] 현재 최루탄의 성분에도 CS분말과 염소산칼륨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인권탄압용' 이라는 평가를 받는 최루탄을 사용해야할 만큼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최루탄을 전량 수거 후 폐기함이 마땅하다는 지적이 있다.[16] 최루탄과 관련된 이러한 국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최루탄의 수출은 특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위와 같은 배경과 수출허가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개정법률안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 등의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도록 하고 수출이 허가된 이후에도 그러한 위험이 추후 발견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개정법률안 제9조 제5 항 및 제6항, 제47조 제2항). "중대한 인권침해" 는 침해의 중대성과 초래된 고통의 정도, 침해의 규모 및 지속성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명백한 위험" 이라

14) 박남춘 의원 2012. 10. 24.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먼지 쌓인 77만발의 최루탄 폐기해야."
15) 박남춘 의원 2012. 10. 11.자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 관내 경찰서에 약 15만개의 최루탄 잠자고 있어."
16) 박남춘 의원 2012. 10. 11.자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 관내 경찰서에 약 15만개의 최루탄 잠자고 있어"; 박남춘 의원 2012. 10. 24.자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먼지 쌓인 77만발의 최루탄 폐기해야."

함은 총포 등이 위에서 명시된 중대한 인권침해나 기본적자유의 억압에 사용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이나 의심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일컫는다. 수출 신청된 총포 등을 수입국 내 최종사용자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17]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이나 훈령 등에 내용을 담을 수 있다.

17) Amnesty International & International Action Network in Small Arms, *Key Elements of the Arms Trade Treaty: An Annotated Guide* (2012), pp.31-32 참조.

발제2

한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은 바레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알라 쉬하비/빌 마크작)

한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은 바레인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알라 쉬하비(바레인워치 활동가)

제 이름은 알라 쉬하비이며, 바레인 시민입니다. 저는 2011년 민주화 시위가 시작되기 전까지 바레인에서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바레인은 엄청난 양의 최루탄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오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저는 바레인 시민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선적을 멈춰라(Stop the Shipment)' 캠페인에 동참한 이들과, 바레인의 최루탄 남용으로 인해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든 이들을 대표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정부가 남용할 무기를 공급하여, 민주국가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열망을 향한 바레인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을 탄압하는 바레인 정부를 돕는 일을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대륙 시민들과 연대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무기공급 중단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한국 시민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민주화 운동 활동가입니다. 수만 명의 바레인 시민들처럼, 우리는 우리 나라에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를 지키며 살고자 거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2011년 아랍 국가들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에 동참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시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거의 백 년 동안 정치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바레인 정부의 저항에 맞서 싸웠습니다. 제가 2012년에 촬영된 비디오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권의 일부이며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민주화 시위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흔한 상황입니다. 저는 매우 큰 발포음 소리를 듣고, 최루탄이 제 머리 높이나 그 아래에서 날아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최루탄에 맞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시위에 나설 때 우리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것보다, 최루탄에 맞을까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어느 곳에나 최루탄을 던지고 이를 마치 총알처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최루탄은 시위뿐 아니라,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을로 와서 가정집에 최루탄을 발사하며, 때론 심지어 경기를 망치는 목적으로 축구경기장에 발사하기도 합니다. 최루가스는 가정집과 자동차의 창문을 통해 스며듭니다. 계속되는 최루가스 노출로 인해 온 나라가 서서히 독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은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를 지날 때 자욱한 최루가스 사이를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곳은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때론 장난 삼아 최루탄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호흡기 고통을 호소하고 임산부들은 유산을 겪습니다.

15살 세이드 사이드 하쉼(Sayed Saeed Hashim)이 시위 후 앰뷸란스에서 사망한 2012년 당시 저

는 시트라Sitra에 있었습니다. 그의 신체 사진을 보면, 그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는 비무장 상태였습니다. 저는 시트라에서 사망한 또 다른 아이인 알리 샤이크(Ali Shaikh)를 진찰하였던 미국인 의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하길, 경찰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아이의 목에 최루탄을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사망한 시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전세계 어떤 다른 나라도 바레인처럼 최루탄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백만 이하의 인구를 지닌 작은 섬나라가 한국으로부터 최루탄 삼백만발을 요구합니까? 경찰은 거리의 길 잃은 고양이에게까지 최루탄을 발사할 것입니다. 최루가스 냄새가 심장에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매일 이천발 이상의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좁은 공간에서 최루가스는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과학실험은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39명의 바레인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늙어서 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루가스가 갑작스럽게 방안을 덮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영상은 경찰이 최루탄을 자이나브 주마(Zainab Jumaa)의 방에 던졌을 때 그녀에게 발생한 일을 보여 줍니다.

바레인 정부는 현재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인권부 장관이 작년 한국에 와서 이를 확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활동가 중 한 명인 압두라지즈 알 아바(Abdulaziz al-Abbar)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최루탄에 머리를 맞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희생자가 너무 많고, 고통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어느 한 명의 공무원도 이러한 잔인한 행동으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국민을 탄압하는 데 무기를 사용하는 나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도록 무기 정책을 새롭게 개정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윤과 금전 추구란 미명아래 바레인과 같이 잔인한 정권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멈추고, 민주주의를 향해 목숨을 걸고 항쟁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때입니다.

바레인 시민들은 평화로운 사람들이며, 한국 정부가 바레인에 평화가 도래하는 것을 돕길 원합니다. 더 이상의 죽음의 연기와 독가스, 그리고 눈물은 안됩니다. 바레인 시민들의 삶을 구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것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My name is Ala’a Shehabi, and I am a Bahraini citizen. I used to work as a lecturer in Bahrain until protests broke out in 2011. Bahrain has been importing huge amounts of tear gas from Korea at a scale that is unprecedented in the world. I am here today with a message from the people of the country of Bahrain. On behalf of all those who joined the Stop the Shipment campaign and who have been crying with despair at the tragic misuse of tear gas in Bahrain.

We request that Korean government stops helping our government in its daily suppression of people’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in their desire to live free in a democratic country by

arming it with weapons that have been misused. We also would like to thank Korean civil society, for acting to stop these arms, for showing solidarity with people on another continent. This humanity has touched the hearts of many Bahrainis.

I consider myself a pro-democracy activist. Like tens of thousands of other Bahrainis, we have taken to the streets to try to bring democracy to our country and region, to live in dignity and peace. We are proud to have joined the movements across the Arab world in 2011, and we continue calling for our rights until today.

Instead we faced the counter-force of the government that has resisted political change for nearly a hundred years.
I will show you a video from 2012 of what happens to us during a protest, which is part of our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 basic human right. This is normal practice. I hear very load bangs and see shots fly past me at head level or under. I think it is just luck that it missed me. When we go to a protest, we worry more about being hit, then about breathing the fumes. Because they shoot everywhere and use the tear gas like a bullet.

Tear gas has become part of our everyday lives, not just in protests. The police come into a village and shoot into homes, sometimes even on football pitches to spoil a match even! It seeps in through the windows of homes and cars. It feels like the nation is being slowly poisoned because of repeated exposure. Once I drove through a cloud of tear gas in the middle of the highway while my kids were in the car. There wasn't even a protest taking place. The police just fire for their own pleasure sometimes. Old people and young children with respiratory problems suffer, pregnant women have miscarriages.

I was there in Sitra in 2012 when Sayed Saeed Hashim, a 15 year old, died in the ambulance following a protest. These images of his body show that he was hit with a tear gas canister that killed him. He was an unarmed protestor. I have spoken to the American doctor who examined the body of Ali Shaikh another child who was killed in Sitra. The police did this for no reason he told me - they shot him in the neck. I have seen too many dead bodies.

I truly believe that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misused tear gas like in Bahrain. Why does a small island with an indiginous population of under 1 million need 3 million tear gas canisters from Korea? The police will shoot tear gas even at a stray cat in the street. The smell of tear gas lingers in the heat. The police are using 2000 or more canisters EVERY day. Scientific tests have shown that in confined space, tear gas can kill. So far 39 Bahrainis have been killed.

Imagine if you are old and you cannot run and suddenly gas fills the entire room. This video shows what happened to Zainab Jumaa when police threw tear gas into her room.

The government says that it has reformed. It even sent it' s Minister for Human Rights here last year to convince you. But right now, a protestor, Abdulaziz al-Abbar is in a coma with a severe head injury after we suspect he was hit by a tear gas canister. The victims are too many, the pain is too much. Not a single official has been tried or convicted of these brutal acts. Korea needs a new arms policy, in line with other countries, that prevents the exports of arms to countries that suppress its citizens.

It is time Korea stopped arming brutal regimes like Bahrain in the name of profits and money and supported those fighting with their lives for democracy.

Bahrainis are a people of peace, and we want Korea to help bring peace to Bahrain, not more clouds of death, poisonous fumes, and more tears. Help save the lives of Bahrainis and reduce needless suffering.

빌 마크작(바레인워치 활동가)

저는 빌 마크작입니다. 저는 예전에 바레인에 거주했습니다. 그 곳에 살았던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저는 바레인의 정치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종종 시위대에 대한 탄압과 관련하여 듣긴 했으나, 바레인 유일의 영문판 언론매체가 정부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바레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접할 수 없었습니다. 2011년 바레인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었을 당시에는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이었습니다. 바레인 정부의 만행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뉴스를 듣고 군인들이 평화로운 거리 시위자들을 향하여 발포하는 영상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저는 바레인에 있는 제 친구들을 돕기 위해 나서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치적 활동과 관련한 어떠한 배경도 없었지만 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레인 사람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이 바레인 정부가 시위자들을 어떻게 진압하는지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제 동료 알라 쉬하비는 '바레인 워치(Bahrain Watch)'라는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의 첫 목표 중 하나는 바레인 정부가 사용한 무기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 정부가 미국산 및 영국산 기관총, 총알과 최루탄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성공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인 덕분에, 미국과 영국은 바레인으로의 대부분의 무기수출을 중단하였습니다.

2011년 말, 우리는 새로운 유형의 최루탄이 엄청난 양으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최루탄은 제품 표면에 어떠한 문구나 표시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라벨도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발포하였습니다. 지역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표시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수출한 회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회사인 대광화공㈜이 이 최루탄을 생산했음을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한국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바레인으로 수출된 최루가스 산탄통은 150만 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광화공㈜에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기 이전부터 이미 바레인에서는 끔찍한 인권침해가 자행된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바레인은 한국산 최루탄을 살상무기로 남용했습니다. 한국산 최루탄이 수입된 뒤 최루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39명에 이른다고 인권 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는 밝혔습니다.

2013년, 바레인 내무부로부터 유출된 정보에 따라 바레인 정부가 최루탄 160만 발을 추가로 수입할 계획임을 알아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다시 대광화공㈜에 수출허가서를 승인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워치가 최루탄 수출 중단을 위해 시작한'선적을 멈춰라(Stop The Shipment)'캠페인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여러 한국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 한국 정부는 대광화공㈜에 수출허가서를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대광화공㈜는 300만 발의 산탄통을 바레인으로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많은 인권 활동가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터키에도 최루탄을 수출했고, 터키 정부 역시 이를 남용했습니다. 며칠 전, 15살 소년 베르킨 엘반(Berkin Elvan)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결국 사망하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에 시위하였습니다.

저는 바레인에 거주했지만,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미국에 가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지인들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들은 자신의 현대 자동차를 보여주며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삼성 핸드폰을 보여주며 그 놀라운 기술력에 대해 칭찬할 것입니다. 어쩌면, 유투브에 올려진 강남스타일 비디오를 보여주며 춤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바레인에 가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신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마을 골목길로 당신을 데려가서 경찰들이 전날 밤 쏜 수백만 발의 최루탄 더미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폭동을 제압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반정부 시위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은 경찰이 쏜 최루탄을 얼굴에 맞아 한쪽 눈을 잃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 말해주거나, 경찰이 침실에 던진 최루탄으로 인해 질식사한 자신의 친척에 대해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터키에서 활동하는 수백만 명의 시위자들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스토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많은 언론사 국제 면에서'선적을 멈춰라(Stop The Shipment)' 캠페인을 다루었고, 이를 통해 한국의 무기수출 상황에 대하여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본 캠페인은 미국 뉴욕타임즈, 유럽 파이낸셜 타임즈와 CNN, 알자지라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일부 유럽 하원의원들은 한국의 무기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데 유럽 측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세계인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택할 때입니다. 한국이 어떤 국가로 인식되길 바라십니까? 기술혁신과 고성능, 강남스타일로 기억되는 한국입니까? 인권 수호에 앞장서는 한국입니까? 아니면, 독재정권에 대항하는 시위자들을 죽음으로 모는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입니까?

저는 제 조국 미국이 바레인에 최루탄과 장갑차 수출하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한국도 국제적 인권 보호 기준에 맞춰 총단법을 개정해야 할 때입니다.

My name is Bill Marczak, and I am a former resident of Bahrain. When I lived there from 2002 - 2005, I was not very familiar with the political or human rights situation. I remember occasionally hearing about violence at demonstrations, but the only English language media in Bahrain was pro-Government, so I did not understand what was going on. When pro-Democracy protests in Bahrain started in 2011, I was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on my PhD. As I heard news of people dying under government torture, and saw the videos of the army opening fire on peaceful protesters in the streets, I knew I had to take some action to help my friends in Bahrain.

I did not have any background in political activism, but I was experienced in conducting research. I thought that the best way I could help my friends in Bahrain was to document how the government was suppressing protests. My colleague Ala' a Shehabi and I founded the organization "Bahrain Watch," for this purpose. One of our first projects examined the weapons used by the government. At first, we found that the government was using machine guns, bullets, and tear gas from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After a successful campaign, these countries stopped most exports to Bahrain.

At the end of 2011, we began seeing huge numbers of a new type of tear gas. This tear gas canister had absolutely no writing or any markings on it. It was completely unlabeled. Police fired these canisters indiscriminately. Loc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documented that these canisters were responsible for many deaths. It was hard to trace which company had exported the canisters, because they were completely unmarked. After it was too late, we figured out that the canisters were made by a Korean company, Dae Kwang Chemical Corporation. The Korean Police said that the company exported 1.5 million of these canisters to Bahrain in 2011 and 2012.

Before Korea gave Dae Kwang this export license, Bahrain had a terrible human rights record. Of course, Bahrain abused the Korean tear gas as a lethal weapon. After Korea exported, the organization "Physicians for Human Rights," found that tear gas killed 39 people in Bahrain.

In 2013, we uncovered a leaked document from the Bahraini Interior Ministry. The document showed that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buy 1.6 million more canisters. The Korean Government was again set to approve the export license to Dae Kwang. This time, Bahrain Watch started a campaign called "Stop The Shipment," to prevent the export. With the help of Korean organization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Korea, our campaign succeeded. The Korean Government denied the export license to Dae Kwang. The company revealed that it

was planning to export 3 million more canisters to Bahrain!

This wa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time and efforts of Korean activists, and others around the world. But the case of Bahrain is just one example of a larger problem. Korean companies have exported tear gas to Turkey, and the government there has also misused it. Most recently, millions protested in Turkey when police shot and killed a 15-year-old boy, Berkin Elvan, with tear gas.

I used to live in Bahrain, but now I live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If you go to the United States and ask my friends what they think of Korea, they will show you their Hyundai car, and talk of its reliability and high quality. They will show you their Samsung phone, and brag about its innovative features. They will open YouTube and dance to the video for Gangnam Style.

However, if you go to Bahrain and ask a person: "What do you think of Korea?" They will take you out to the village street and show you the piles of hundreds of Korean tear gas canisters that police fired the night before -- not to control riots, but to punish residents for opposing the government. They will introduce you to their son who lost an eye when police shot a Korean tear gas canister at his face. They will tell you about their relative who suffocated to death when police threw Korean tear gas into his bedroom. You will hear similar stories if you talk to the millions who protested in Turkey, and were also attacked with Korean tear gas.

Our "Stop The Shipment" campaign received huge international coverage, and put a spotlight on Korea's arms export record. The campaign was covered in the New York Times in the US, Financial Times in Europe, and CNN, Al Jazeera, and others internationally. Some MPs in Europe questioned whether Europe should take action against Korea for its arms export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becoming increasingly familiar with Korea. The Korean Government has a choice: which Korea will people around the world know? Will they know the Korea of innovation and high quality, and Gangnam Style? Will they know Korea as a leader in human rights? Or will they know Korea as the country that exports death to their loved ones who stand against tyranny?

I worked to help stop exports of tear gas and armored vehicles to Bahrain from my country, the United States. Now, it's time for Korea to jo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adopt a sensible arms control policy that protects people's human rights.

토론1

경찰청

총단법 개정 토론회 관련, 경찰청 입장 보고

❑ 그간 경과

❍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는, 바레인 정부에서 사용한 최루탄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며 국내에서 제조된 최루탄의 수출제한 요구

※ 지난 3년간 한국산 최루탄이 약 160만발 정도 바레인에 수출됨

❍ 관계부처(경찰청, 외교부, 산업통상부, 국방부, 방위사업청)는 최루탄이 ATT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와무기거래조약(ATT) 비준을 위한 논의를 하고자 외교부에서 관계기관 회의 실시('14. 2. 28)

ATT 적용대상 무기류

가. 전차 나. 장갑차 다. 대구경야포 라. 전투기 마. 공격용헬기
바. 전함 사. 미사일 및 발사대 **아. 소형무기**

❑ 現 최루탄 수출시 관련 절차

❍ 최루탄은 총단법상 화공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경찰청장의 허가권한이 법령에 의해 지방청장에게 위임)를 요하는 동시에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군용물자품목)에도 해당되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별도로 요함

- 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공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으나, 타국의 인권보호를 이유로 수출 제한은 사실상 곤란함 (총단법 제9조 제4항)

총단법은 총포·화약류의 유통절차를 규정한 행정기술법이면서도 위반시 형벌이 부과되는 행정형법인바 엄격히 해석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즉, '공공의 안전유지' 개념에 '국외의 공공의 안전'까지 포함하여 확대해석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그러나, 무기류에 대한 대외무역을 관장하는 방위사업청장은 '국제평화'를 사유로 무기류의 수출을 제한할 근거가 있음**(별지 참조)**

※ '14. 1월 방위사업청에서 바레인에 대한 최루탄 수출을 국제평화기준에 의거, 수출 보류함

❑ 관계기관 회의결과

❍ 최루탄은 ATT(무기거래조약)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기존의 통제시스템에 따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 별 지

대외무역법 정리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제19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거나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 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허가기관) ①별표2 및 별표3의 전략물자 허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5에서 정한다.

1. 2. 생략

3. 방위사업청장 : 별표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과 별표 2에 해당되는 물품 등 가운데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별표 3(군용물자품목)】

ML 1 : 구경 20mm 미만인 활강무기와 구경 12.7mm 이하의 화기, 자동무기 및 부속품

ML 2 : 구경 20mm 이상인 활강무기와 구경 12.7mm 초과의 무기, 발사기 및 부속품

ML 7 : 생화학 독성작용제, 폭동진압제, 방사성물질 및 관련장비, 부품, 물질

⇨ **총단법상의 모든 총기는 ML1에, 최루탄은 ML7에 포섭되어 총기 또는 최루탄 수출시 경찰청장 허가와 별개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토론2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원고5_토론2

무기수출 규범 부재와 최루탄 수출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최루탄은 전략물자인가?

작년 10월 서울의 망원동에 있는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들에게 영국의 평화운동가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된 최루탄 수출 문제는 국가 전략물자 거래의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메일에서는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의 민주화 시위대에 무차별로 발포되어 시민이 사망하고 있다"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1년 아랍의 봄과 맞물려 중동의 왕정국가인 바레인에서는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3년째 지속되고 있다. 단지 시위를 해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쏘아대는 최루탄은 사실상의 살상무기였다. 이 단체의 활동가인 여옥씨는 필자에게 "지난 3년 간 바레인에서 최루탄으로 인한 사망자가 39명이나 발생하여 한국산 최루탄은 이미 시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라는 점을 바레인 현지 활동가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각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 착수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3년 간 한국의 한 생산업체가 총 150만 발을 바레인에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에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우선 인구가 120만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에 이렇게 많은 최루탄이 별다른 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고 수출된 성사되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최루탄은 2013년 이전까지는 전략물자로 분류되지 않았었는데, 뒤늦게 문제가 되자 정부는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수출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한 채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국제인권단체인 '바레인 워치'와 국내 평화운동단체로부터 비난이 빗발치자 올해 1월에 와서야 방사청은 최루탄 수출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마침 바레인 정부로부터 160만발의 추가 주문이 발주되고 있던 상황에서 그나마 추가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최루탄은 우리 방위사업법 53조에 의해 방위사업청이 수출 허가를 결정하는 주무 관청이다. 해당 업체 등은 민수용 최루탄 수출은 방위사업법 관련 사항이 아니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9조에 의해 제조업체가 지방경찰청장 허가를 받아 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든지 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최루탄은 개인이 소비할 수 없는 위험 물질이고, 독재국가가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산물자라는 점에서 방위사업청이 아무런 사전조치나 감독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런 시민단체 주장을 방사청이 수용하면서 바레인 수출은 제동이 걸렸지만 그 외에 다른 국가에 얼마나 더 수출이 되었는지는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마침 3월 12일에 터키에서 최루탄을 머리에 맞아 9개월째 사경을 헤매던 15살의 소년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내 언론은 이를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된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사건을 빗대 '터키판 이한열'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터키에 최루탄 최대 공급자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점은 보도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미 작년 5월에 터키 시위현장에 나가있던 영국 교원노조 활동가들은 "터키 시위 현장에 대량으로 공급된 최루탄은 한국산"이라고 밝히며, 그 생산업체

에 “(최루탄으로) 벌써 5명이나 죽었다. 도의적 책임을 느끼라”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까지 했다. 해외 활동가들은 “독재정권의 폭력적인 진압에 살인무기로 사용되는 최루탄을 수출한데 대한 법적 책임도 추궁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단체들은 현장에서 수거된 한국산 최루탄 DK-500의 위험성과 그 파편, 부상자 사진 등을 유포시키며 한국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눈물과 한숨도 수출하는 나라

암암리에 수출되는 한국산 최루탄은 이미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1990년대에는 동티모르 독립을 주장하는 시위에 한국산 최루탄이 대량으로 공급되었고, 이스라엘에 수출되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중들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해외에 수출되는 최루탄은 발사대에 따라 38미리와 40미리용 최루탄이 있고, 과거에 국내에서는 ‘사과탄’으로 불리던 손으로 투척하는 수류탄 모양의 제품도 있다. 1980년대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최루탄 사업은 군사독재가 만들어 낸 기형아였다. 1987년 당시 국내 독점 최루탄 생산업체인 삼양화학의 한영자 사장은 소득세 납부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해 대선을 앞 둔 시기에 전두환 대통령은 정호용 국방장관으로부터 “대선자금을 기부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참 기특한 기업이다. 잘 받아두라”고 지시하여 한 사장으로부터 100억원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훗날 재판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한열 뿐만 아니라 계속 최루탄 파편으로 인한 부상자가 속출하자 이 업체는 그 이후 최루탄 사업을 포기했다. 시위대와 시민을 가리지 않고 퍼부어지던 최루탄은 독재정권의 야만성의 상징으로 인식되자 범국민적으로 최루탄 추방운동이 일어났다. 최루탄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어머니들이 이 업체에 달려가 거세게 항의하자 한 사장이 “최루탄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항변을 했다. 그러자 화가 치민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가 없다면 한 숟가락 떠먹어 보라”고 맞받아쳤다. 극단의 공포와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살상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최루탄이 인체에 해가 없다는 데 더 화가 치민 것이다. 이에 한 사장이 사과하면서 이후 이 업체는 최루탄 사업을 포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에서 유일한 한 업체만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 회사 누리집을 들어가 보면 대표자의 인사말 중에 “최루탄제품은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그 품질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라는 개운치 문구가 보인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수출한 것은 단지 최루탄만이 아니다. 우리가 오래 전에 느꼈던 눈물과 한숨과 고통도 함께 수출되었다. 최루탄이 수출되면 방패, 방독면과 같은 시위진압 관련 장비들의 수출도 덩달아 늘어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부도덕한 권력이 효과적으로 시민을 제압하는 노하우까지 함께 수출되는 연쇄반응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경우가 그러했다. 지금도 자료 화면으로 보면 1990년대 동티모르 독립운동을 유혈 진압하는데 사용된 최루탄, 방패, 방독면뿐만 아니라 트럭, 소총, 심지어 군복까지 몽땅 한국제다. 1999년에 물러난 악명 높은 수하르토 정권은 한국의 총 방산물자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구매하는 초특급 고객이었다. 시민의 저항에 대한 권력의 적대감은 구체적으로 시위 현장에서 어떤 물리력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수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우 1980년대에 한국의 시위진압 노하우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지 구매 사절단이 한국에 와서 최루탄 성능을 체험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산 최루탄의 독성에 너무 놀란 나머지 “우리같이 더운 나라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면 견디지 못하고 사망할 것”이라며 수입을 포기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점점 더 독해지고 폭력화되고, 시위대와 시민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뿌려지는 그 최루탄이 바로 한국에서는 독재의 종말을 앞당

겼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과거를 우리는 지금 해외로 수출하는 중이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한 국내 규제절차의 석연치 않은 점은, 최루탄의 독성에 따라 독성이 높으면 전략물자이고, 독성이 낮으면 일반물자로 분류된다는 기준이다. 지금껏 방위사업청이 수출 승인에 업무를 회피해온 이유는 최루탄이 갖고 있는 전략물자의 속성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이 때문에 방사청은 해당 업체가 수출 승인을 요청해 올 경우 "독성을 낮춰서 방사청 승인을 받지 말고 지방 경찰청 허가를 받아 수출하라"고 통보하며 사실상 업무를 회피해 왔다. 그러나 독성을 낮출 경우 "품질 문제로 수출에 차질이 생긴다"는 업체 입장에 따라 마지못해 이 문제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서도 우리 최루탄의 독성은 사용자, 즉 독재 정권의 요구에 부합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성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규범이 확실치 않은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은 "돈이 된다면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행보를 보여 주었다. 2010년 10월에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가 무기수출 7대 국가에 진입한다"는 구상을 담은 국방산업 선진화 전략을 보고하였다. 이후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에 방산 수출지원센터가 설립되었고, 방위사업청은 수출 실적을 부풀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고자 했다. 방위사업청의 한 청장은 방위산업체가 당시 이라크에 민수용으로 수출된 트럭이 군용 트럭을 생산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방산제품으로 산입하고, 민간용 디지털 카메라를 수출한 것까지 포함시켜 방산 수출액을 부풀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건 명백히 방위사업법에 지정된 방산물자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였다. 그런가하면 수출 계약이 맺어진 단계에서 계약금만 수출액에 반영해야 하는데 총금액을 반영하여 당해연도 수출액을 부풀리는 수치 조작도 이어졌다. 이 당시 국내 언론에 방산수출 20억 달러를 초과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어 있는데, 이건 방사청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조작된 수치였다. 그리고 방사청은 일체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부임한 청장은 아예 "방산수출액 100억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수출목표액까지 제시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무기수출이란 국가정책을 목표액까지 정해 대외에 공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 밖에 없다. 이런 수출정책은 한국 기업에게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다가온다.

2008년에 전차강국인 독일을 따돌리고 한국이 터키에 흑표(K-2)전차를 수출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뉴스가 터져 나왔다. 개발 중인 한국의 차기전차가 어떻게 터키에 수출될 수 있었을까? 업체가 수출 마케팅을 하러 터키에 협상단을 보냈을 때 방위사업청의 한 간부가 이들과 동행하였다. 그는 현장에서 터키의 무리한 요구를 업체가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업체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며 "무조건 수출"을 추진하게 된다. 이 계약에서는 한국이 터키에 전차 생산사업을 기술지원 하되, 터키가 전차사업에 실패하면 이를 몽땅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독소조항 때문에 우리는 국산 엔진과 변속기 개발이 늦어져 아직 전차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터키는 우리 기술에다가 독일제 변속기와 엔진을 달아 벌써 전차가 운용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전차를 터키가 사용하고, 우리는 아직 양산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리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국가이익의 손실로 직결된 경우다.

단순한 법개정을 넘어 무기수출 통제 규범을 제정해야,

무기 수출이라는 정책 목표가 공표되자 놀란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집중 감시에 들어간 미국 정부는 국산무기에 미국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트집을 잡아 국내업체의 연구개발에 제동을 걸며 사사건건 감시를 한다. 그 결과 2011년에 공군 전투기에 부착된 센서 장비인 타이거아이를 한국 공군이 미국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분해해 기술을 탐지했다고 주장하며 미 국방부 수석차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한국에 급파했다. 그런 미국의 압력은 전 방산 업계로 파급되었다. 국내 한 방산업체가 파키스탄에 ALQ-200이라는 재밍 포드를 수출하기로 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미국의 방산기술보안청은 "파키스탄은 중국 전투기를 사용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미국 기술이 활용된 센서 장비가 수출될 수 있느냐"며 한국정부에 수출을 포기하도록 종용하였다. 계약을 하고도 수출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진 틈을 타서 이번에는 미국 업체가 파키스탄에 유사 장비를 수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방산 기술의 종주국으로서 미국이 한국의 수출에 전면 제동을 건 것은 미 대사관의 '불루 랜턴'이라는 암호명의 기술보안 업무수행의 산물이다. 최근 우리의 고등훈련기 T-50 수출이 일부 성사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여전히 미국의 수출허가(E/L) 사항으로서 철저히 미국의 그늘 아래 종속되어 있다. 그나마 수출이 전망되는 한국형 헬기나 잠수함은 미국이 아닌 유럽 기술을 사용했기에 엄격한 수출 통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미국은 결코 동맹국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주요 장비를 수출하기 어려운 한국이 방산수출을 하려면 중저가 재래식 장비분야 밖에 없는데, 이런 건 선진국에 수출할 수 없고 주로 분쟁지역이나 독재정권이 주요 고객이 된다.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로 꼽히는 확산탄(자탄이 공중으로 확산되어 폭발하는 포탄)은 파키스탄에 수출되었다. 가장 은밀하게 거래되는 권총과 같은 소형무기류 수출에 한국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거래 투명성은 31위로 국제평화단체 'Small Arms Survey'는 2012년에 평가하였다. 결국 비인도적 무기수출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무기 수출이 국가이익이라는 점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런 재래식 무기 수출은 최루탄과 같이 국제적 비난이라는 국가의 짐만 키우는 중이다. 그런데도 최근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얼 창조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확산탄 문제가 있다. 수많은 자탄이 공중으로 확산되는 확산탄은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로 지목된다. 실전상황에서 1%의 불발탄만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민간인에게 가해진다. 실제로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는 3주 동안 미국이 1만782발, 영국이 2170발을 사용하였고 소폭탄수는 200만개에 달하는데, 그 중 약 9만 개가 불발탄으로 추산된다고 국제평화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주장한다. 2006년 레바논 남부에는 불발율 1%라고 주장된 확산탄 약 400만발이 이스라엘에 의해 뿌려졌는데 1%면 4만 발이 남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불발탄은 100만발에 이르는 것으로 유엔에 의해 확인되었다. 라오스에는 전쟁이 끝나고도 8000만개의 불발탄이 남아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천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98%는 민간인이다.
우리 방위산업체는 로켓탄과 헬기,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확산탄을 생산하며 70mm 다련장과 차기다련장을 개발하였다. 우리 업체는 2004년에 파키스탄에 확산탄 수출을 성사시켰고, 이후 방위사업청의 수출진흥정책 덕분에 2008년에도 파키스탄에 상당량을 수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정부가 탐내는 무기수출로는 소형무기류가 있다. 국방연구원이 2007년에 보고한 '방산수출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분석 및 수출전략' 보고서는 분쟁지역을 잠재적인 수출확대 지역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인 수출을 독려한다. 이런 소형무기에 의해 매년 50만명이 사망하는데, 그 중

80%가 여성과 아동이다. 매일 13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셈이다. 권총, 소총과 같은 소형무기는 휴대가 용이하고 조작이 단순하기 때문에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18세 이후 소년병들에게 집중 공급되고 있다. 한국의 소형무기 수출은 세계 10위권에 속하며, 무기거래 투명도는 52개국 중 31위인 것으로 국제평화단체 Small Arms Survey는 2012년에 평가하였다. 은밀한 거래가 많은 분야이지만 한화는 같은 해에 소형무기수출 규모가 1800억원으로 그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고한 민간인 사망은 자제하고 예방한다는 게 모든 무기수출국의 변명이지만 우리 정부는 아예 그런 변명조차 안한다. 그래서 독재정권이 있는 분쟁지역, 인권탄압국에 우리의 무기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역행하였는지는 아예 설명조차 없고, 이를 차단하는 제대로 된 규범조차 없다. 전쟁이란 국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국제정치학자들의 변명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전쟁은 그 실제 정치적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이 주로 희생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국가의 행위', 또는 '국가의 행정조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된다.

한편 2013년에는 유엔에서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역사상 최초로 세계 공통의 재래식 무기거래를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가 탄생하였다. 이 조약이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50개국의 비준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서명국은 113개국이지만 비준국은 7개국으로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 우리는 서명만 한 국가이다. 재래식 무기거래의 엄격한 국제공통기준을 설립 또는 규제를 향상시키고 재래식 무기의 불법거래를 통제하여 국제 평화와 안전, 인권에 기여하자는 이 조약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무기 수출을 못해 조바심을 내는 우리 정부에서 이 조약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는 동안 독재정권이 시민을 억압하는 데 우리 무기가 조용히 흘러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 속에 매력국가, 즉 소프트파워를 갖추려면 무기수출 강대국을 꿈꾸는 나라의 격에 부합되도록 먼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또는 그와 유사한 국내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교전 쌍방의 국가에 동일한 무기 판매 금지, 비인도적 무기 수출 규제 등의 규범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단지 행정기관의 재량권으로 이 문제가 관리되고 있다. 그 결과 93년도에 대인 지뢰를 미국의 감시를 피해 수출하려다가 두 번 적발되어 선적한 물품을 하역하는 수모도 겪은 바 있으며, 교전 쌍방인 그리스와 터키에 동일한 탄약과 신관을 판매한 전례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 최루탄 수출 문제를 계기로 국제평화와 인권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시민적 감시와 행정적 규제가 동시에 관리한 규범과 기준을 만들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토론3

박승호
(무기제로 활동가)

원고6_토론3

토 론 문

박승호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무기제로 활동가)

1. 들어가며 - 최루탄, 바레인, 대한민국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87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인 인권을 위한 의사회(Physicians for Human Rights)는 <The Use of Tear Gas in the Republic of Korea>[1]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당시 한국 정부가 민주화항쟁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최루가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했음을 고발하면서 '민간인 주민에 대한 최루가스의 사용은 비인도적이며 의학적으로 용납불가능하다'[2]는 결론을 내리고 민간인 주민에 대한 최루가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권고내용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지 근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최루가스가 시위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최루탄을 생산하고 있다.

2011년 튀니지에서 촉발된 이른바 '아랍의 봄'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시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고, 이중 다수 국가들이 무력을 동원해 진압에 나서면서 국제적으로 최루탄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이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 ~ 2013년 한국은 바레인으로 약 142만 발, 터키로 약 47만발의 최루탄을 수출했다.[3]

이중 한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진 바레인의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바레인 당국은 2011년 2월 최초 시작된 대규모 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 산탄총으로 총격을 가하고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4] 통상 최루탄은 '비살상무기(non-lethal weapon)' 또는 '준살상무기(less-than-lethal weapon)'로 분류되지만 2011년 2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만 최루탄 사용으로 최소 39명의 사망자[5]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바레인에서는 최루탄이 비살상무기의 기능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바레인에서 최루탄은 사실상 살상무기로 사용된 것이다. 인권을 위한 의사회는 2012년 8월

---

1) Physicians for Human Rights, <The Use of Tear Gas in the Republic of Korea: A report by health professionals>, 1987. 7, http://physiciansforhumanrights.org/library/reports/the-use-of-tear-gas-in-korea.html 2014. 3. 15, 접속.
2) 상동. p5.
3) 장하나, 진선미 의원실 제공자료. "최루탄 수출허가 현황", 경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4) Amnesty International, "Bahrain's dark side - Empty promises while repression goes unabated", 2013. 4. 17. https://www.amnesty.org/en/news/bahrain-s-dark-side-empty-promises-while-repression-goes-unabated-2013-04-17 2014. 3. 15, 접속.
5) Tear-Gas Related Deaths in Bahrain, Physicians for Human Rights 홈페이지. http://physiciansforhumanrights.org/issues/persecution-of-health-workers/bahrain/bahrain-tear-gas-deaths.html 2014. 3. 15, 접속.

발표한 보고서 <Weaponizing Tear Gas: Bahrain's Unprecedented Use of Toxic Chemical Agents Against Civilians>에서 바레인 경찰의 최루탄 공격이 빈번하고 가해 경찰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민간인 주민에 대한 최루탄 공격은 의도적이라 볼 수 있으며, 바레인의 공식적 정책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6] 동 보고서에서 인권을 위한 의사회는 바레인의 최루가스 사용 실태와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사례로 1987 년 한국의 상황을 꼽았다.[7] 약 30 년 전 민주화항쟁 과정에 최루탄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했던 국가가 이제는 타국에 동일한, 아니 어쩌면 훨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에 그 고통의 도구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2. 현행 총단법 수출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

현행법 상 최루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의거 '분사기'로 분류되어 동법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소재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경찰청은 수출허가시 규제사유가 되는 "공공의 안전"을 국내적 상황에 한정하고 있어 바레인의 경우만 하더라도 최루탄 사용으로 인한 생명권의 박탈, 과도한 무력 사용과 같은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가 자행될 것이라는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지난 3 년간 수출 허가 심사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현행 총단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수출 허가 관행에 문제가 없다는 접근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주요 인권협약의 당사국으로 무기 수출과 같은 국가 행위를 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유엔 헌장 제 55 조, 제 56 조는 유엔 회원국에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위해 개별적, 집단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되는 무기가 타국에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침해행위에 사용될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허가하는 것은 이 같은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엔 국제법위원회는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조문 제 16 조에서 어떤 국가가 국제적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조력하는 국가는 그러한 국제적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8]

우리 헌법이 국제인권법 등 국제법규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의 효력 또한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의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 또 발제자의 지적대로 총단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국에서 수출되는 무기가 해외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도 이를 국내적 상황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무기수출시 한국이 지고 있는 국제적 책무를 총단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6) Physicians for Human Rights, <Weaponizing Tear Gas: Bahrain's Unprecedented Use of Toxic Chemical Agents Against Civilians>, p2. 2012. 8.

7) Physicians for Human Rights, <Weaponizing Tear Gas: Bahrain's Unprecedented Use of Toxic Chemical Agents Against Civilians>, p11. 2012. 8.
http://physiciansforhumanrights.org/library/reports/weaponizing-tear-gas.html
2014. 3. 15, 접속.

8)국제앰네스티, <무기이전결정에 어떻게 인권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p5, ACT 30/008/2008, 2008.
유엔 국제법 위원회,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조문 제16조, 유엔총회A/RES/56/83, 2001.12.12.

수출시 인권 기준에 근거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비단 최루탄 뿐이 아니다

바레인워치 활동가들의 증언을 통해 한국에서 수출된 최루탄이 해외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살펴보았지만, 총단법의 규제대상 중 해외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거나 이를 조장하는데 사용되는 무기는 최루탄 뿐이 아니다.

총단법 하에서 규제되는 물품들은 대분류 상으로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법 제 2 조)으로 이중 군수용이 아닌 것에 한정되어 있다. 군수용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경우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법 제 3 조) 민수용 총포에는 경찰이나 치안군과 같은 법집행공직자나 민간 경비업체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권총(리볼버, 피스톨), 소총, 산탄총(엽총 또는 샷건)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총포에 사용되는 탄약 역시 “화약류”에 속하는 “화공품”으로 분류되어 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 분사기의 경우는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법 제 2 조)로 통상적 의미에서 최루탄을 말하나 발사형태나 작동방식에 따라서 그 종류는 다양하다. 분사기 내에 포함된 최루액의 종류에 따라 일부는 군수용으로 분류되어 수출시 총단법이 아닌 방위사업법에 따라 규제를 받기도 하지만[9], 이 경우에도 최루액을 담고 있는 용기가 분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 허가 역시 득해야 한다.

총단법 규제대상이 되는 민수용 총포와 탄약 일체 및 분사기는 세계 각국에서 치안용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 초법적 처형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바레인을 포함하여 아랍의 봄 이후 다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경찰, 치안군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실탄, 고무탄환, 최루탄 등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특히 이집트의 사례는 흔히 민수용으로 분류되는 무기들이 치안군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례 1> 이집트 치안군의 무분별한 산탄총 사용

2011 년 1 월 25 일, 반정부 시위자들이 튀니지 혁명 성공의 여세를 몰아 이집트에서 거리를 점거하고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거리를 점거하고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으며, 시위는 약 18 일간 지속되면서 이집트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시민들의 요구에 이집트 당국은 무장한 치안군을 배치하고 시위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최루탄, 물대포를 사용했으며 실탄을 발포하고 산탄총이나 고무탄환을 사용하기도 했다. 치안군은 비례의 원칙을 어기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총기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약 6 천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최소 840 명이 사망했다. 다수 사망자의 경우는 머리, 가슴 등 상반신에 총격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다. 국제앰네스티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당시 치안군은 치안군이나 기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가해진 상황임 아님에도 실탄을 발포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치안군의 무분별한 총격으로 인해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나 행인들이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치안군의

9) 바레인에 수출된 최루탄의 경우 대부분 CS가스를 포함한 최루액을 담고 있는데, CS가스의 경우는 방위사업법 및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별표3] 군용전략물자 세부항목 중 대분류 중 ML7에 해당되어 수출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탄총을 사용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했으며, 시위자들이 입은 치명상이나 기타 부상 중 다수는 산탄총에 맞아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10] 당시 타흐리르 광장에 설치된 임시의료소 담당자는 눈에 산탄총에 맞아 시력을 잃은 사람만 300 명 정도를 치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11]

이집트 치안군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 무분별하게 산탄총, 고무탄환, 최루탄을 발포하는 등 비례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에서 벗어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그 결과 2011 년 1 월 25 일 최초 시작된 대규모 시위 이후로 무바라크 대통령이 하야하기까지 18 일 동안에만 최소 840 명이 사망하고 6,000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같은 이집트의 사례는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시민들의 생명권을 박탈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 이집트에서 6m거리에서 산탄총에 맞아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였던 25세 가베르 아흐메드 압델 바기(Gaber Ahmed Abdel Baqy)의 사진 © Private

[사진 1]에 보이는 가베르 아흐메드 압델 바기(25 세)의 경우, 시위가 열리고 있던 알-제라윈 광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다가 치안군이 발포한 산탄총을 맞고 사망했다.[12] 몸에 보이는 총알 자국은 산탄총에 사용되는 탄약의 한 종류인 벅샷(Buckshot)에 맞아 생긴 상흔인데, 벅샷은 산탄총에 흔하게 사용되는 탄약의 종류로 이집트와 바레인 치안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는 산탄총 탄약도 바로 벅샷으로 알려졌다. 벅샷은 보통 인명 살상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냥용으로도 널리 쓰는 탄약으로 알려 있으며, 때문에 통상 민수용으로 분류되곤 한다. 한국에서도 산탄총과 산탄총탄은 민수용으로 분류되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총단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이집트, 바레인 등에서 치안군인 시위대를 향해 산탄총을 사용한 방식은 이 같은 분류를 무색하게 한다.

10) Amnesty International, <Arms Transfer to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Lessons for an effective Arms Trade Treaty> ACT 30/117/2011, p25, 2011. 10.
11) 상동
12) Amnesty International, <Arms for Internal Security: Will they be covered by an Arms Trade Treaty?> ACT 30/120/2011, p12, 2011. 6.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2010 ~ 2012 년 사이 이집트에 미화 3,118,451 달러(약 33 억원) 상당의 산탄총 탄약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 년 1 월 치안군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국제적으로 큰 비난과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다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이 이집트 치안군이 시위자들에게 산탄총을 무분별하게 발포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0 년에 이어 2011, 2012 년에도 이집트로 산탄총 탄약을 수출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치안군이 과도한 무력을 동원해 시위자들을 해산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이집트 치안군은 2013 년 8 월 14 일 모르시 대통령의 축출에 항의하며 연좌시위를 벌이던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으며, 그 결과 이날 하루 동안에만 최소 1,000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13] 이와 관련해 지난 3 월 7 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25 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덴마크 등 27 개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집트 치안군이 시위자들을 상대로 비례적이지 않은 살상력을 동원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 하기도 했다.[14]

[표 1] 2010 ~ 2012 對이집트 산탄총 탄약 수출 출처: 유엔 세관데이터(UN Comtrade)[15]

Period	Trade Flow	Reporter	Partner	Code	Trade Value	NetWeight (kg)	Quantity Unit	Trade Quantity	Flag
2010	Export	Rep. of Korea	Egypt	930621	$1,577,766	31,653	8	31,653	0
2011	Export	Rep. of Korea	Egypt	930621	$1,089,720	11,992	8	11,992	0
2012	Export	Rep. of Korea	Egypt	930621	$450,965	7,430	8	7,430	0

이제껏 살펴본 사례는 현행 총단법 상 민수용 총포에 해당하는 산탄총이 이집트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현행 총단법은 수출 허가권자가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수출되는 품목이 이집트에서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가능성을 평가해야 할 명시적인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때문에 앞서 기술한 이집트의 상황을 감안할 때 수출된 총포 등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에도 한국의 허가관청은 2010 ~ 2012 년 사이 33 억원 상당의 산탄총 탄약이 이집트로 수출되는 것을 막지 않았다. 현행 총단법 제 9 조 제 4 항의 "공공의 안전" 이 경찰청의 주장처럼 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명시적 규정의 부재로 인권기준에 근거해 수출을 제한할 명분이 없다면 이제라도 법개정을 통해 그러한 규정을 마련함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안된 개정법률안과 같이 수출 신청시 해당 총포 등이 수입국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고 그러한 위험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출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13) Amnesty International, <Egypt: Roadmap to repression>, MDE 12/005/2014, p5, 2014년 1월
14) 덴마크 등 27개국이 발표 공동성명, http://fngeneve.um.dk/en/news/newsdisplaypage/?newsID=EB280696-2F4F-427A-A721-5963916F2CB2
15) 유엔 상품별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United Nations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db/dqBasicQueryResults.aspx?px=H2&cc=930621&r=410&p=818&rg=2&y=2012,2011,2010,2009,2008&so=8 2014. 3. 15. 접속

3. 개정법률안 제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제안된 개정법률안 제9조 제6항은 제5항의 결격사유 즉, 총포 등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려 한다.

1) "중대한 인권침해"와 "명백한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개정법률안 제9조 제5항 전반부)

수출 허가권자가 수출 신청된 총포 등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를 결정하려면 먼저 어떤 행위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총포 등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자가 간략히 제시한 바 있듯이 국제인권법의 실제 적용례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인권침해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침해되는 권리의 속성**과 그러한 **침해 행위의 규모나 지속성**에 근거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16]

침해되는 권리의 속성(인권침해의 속성)
유엔 인권조약감시기구들은 당사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특정 행위들을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했는데 그러한 특정 행위에는 살인, 강간, 강제이주, 군대나 치안군에 의한 과도한 무력사용, 강제실종, 고문, 여성살해 등 성에근거한범죄 등이 포함된다.[17]

침해 규모와 지속성
앞서 제시된 유형의 인권침해 행위가 "중대한 인권침해"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또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인 행위인지 여부이다.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단지 일회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든 이집트의 경우는 치안군이 시위자들을 향해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 무분별하게 총격을 가하는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침해되는 권리의 속성), 반복적으로 시위자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이러한 행태가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수백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침해 규모와 지속성)에서 이집트 치안군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다뤄진 바레인의 사례 역시 무분별한 최루탄 사용으로 최소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침해의 규모) 치안군이 최루탄을 사용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민간인 지역을 가리지 않고

16) UNIDIR <Disarmament Forum 2009-no.2>, p31, Clare Da Silva, "Creating a human rights standard for the Arms Trade Treaty"
17) 상동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는 점(침해의 속성), 또 그러한 최루탄 사용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점(침해의 지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바레인 치안군이 최루탄을 사용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수입국에서 총포 등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이라는 **"명백한 위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의 조약감시기구인 고문방지위원회는 그러한 위험을 판단하는데 참고 할만할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18]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반논평 제1호에서 개인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에 대해서 다음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 *당사국과 본 위원회는 통보자가 추방, 귀환 또는 송환된다면 자신이 고문 당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믿음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념하며, 고문 위험성이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근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이 높은 개연성(highly probable)의 시험을 통과할 수준일 필요는 없다.*[19]

위와 같은 개념은 총포 등이 수입국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고문방지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고문 당할 위험에 대한 상당한 근거'의 개념은 막연히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의 수준을 넘어 '그러한 침해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총포 등이 수입국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명백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개정법률안 제9조 제5항에 따라 수출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할 요소들

허가관청이 앞서 제시된 "중대한 인권침해"와 "명백한 위험"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라 실제 수출 허가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할 요소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수입국의 인권 존중도 등에 대한 평가
- 수출 신청된 총포 등의 특성에 근거한 평가
- 최종사용자에 대한 평가
- 전용 위험성에 대한 평가

허가관청은 수입국이 주요 인권협약에 가입했는지, 수입국이 당사국인 인권협약에 의해 부과된 인권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수출 신청된 총포 등이 수입국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등에 사용되었다는 신뢰할만한 보고(유엔, 비정부기구 등)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신청된 총포 등이 수입국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

18) 상동, p32

19) Committee against Torture, <General Comment No. 01: Implementation of article 3 of the Conven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22> 1997.11.21. A/53/44, para 6

판단하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출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수출심사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본 토론문에 포함된 "붙임"을 참조할 것)

개정법률안 제 9 조 제 5 항은 수출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 중 하나로 **전용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무기 금수조치가 부과되어 직접적으로 무기를 수입하기 어려운 국가가 제 3 국을 경유해서 그러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결격사유라고 할 수 있다. 최루탄 사용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바레인 경우는 브라질 Condor Non-Lethal Technologies 社가 제조한 최루탄이 발견되자 바레인워치 등은 브라질 당국에 강력히 항의했다. 문제가 비화되자 브라질 당국이 나서서 자국은 바레인으로 수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바레인에서 사용된 브라질산 최루탄이 제 3 국에서 재수출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전용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브라질 당국의 반응을 보도한 브라질 현지 언론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용으로 수입한 최루탄을 바레인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20]

현재 총단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출[입]신청서(별지 제 5 호 서식)에는 수입국 내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수출되는 총포 등의 최종사용용도(End Use)는 무엇인지를 기술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전용의 위험을 사전에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시 수출 신청인에게 수입국으로부터 수입목적확인서(또는 최종사용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시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전용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률안 제 47 조 제 2 항은 수출 신청이 허가된 이후에라도 추후에 전용위험성 등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결격사유를 발견했을 경우 수출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안된 총단법 개정 방향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조치로 여겨진다.

5. 나가며

이미 많은 수의 국가들이 무기수출시 인권기준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루가스 등 경찰·치안용 장비의 수출시에 "범죄통제 및 탐지 도구 및 장비의 수출에 있어 지속적인 패턴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1979 년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에 따른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1]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에 적용되는 무기수출통제에 관한 유럽연합 공동입장 제 2 조는 "수출되는 군사기술이나 군사장비가 내부적 탄압의 목적으로 사용될 명백한

---

20) FOLHA De S. Paulo, Claudia Antunes, <Itamaraty investiga uso de gás lacrimogêneo no Bahrein>, 2012.11.1.
http://www1.folha.uol.com.br/mundo/2012/01/1032764-itamaraty-investiga-uso-de-gas-lacrimogeneo-no-bahrein.shtml 2014. 3. 15, 접속.
Rasheed's World, <Brazil to investigate use of tear gas in Bahrain>
http://www.rasheedsworld.com/wp/2012/01/brazil-to-investigate-use-of-tear-gas-in-bahrain/
2014. 3. 15, 접속.

21) Amnesty International, <If you resist, We'll shoot you>, AFR/62/007/2012, p41, 2012.6.12.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원국은 수출 면허를 불허해야 하며" 더 나아가 "유엔이나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등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된 국가"로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군사기술이나 군사장비의 속성을 고려하여 건별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2]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군용 총포를 수출할 경우에는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훈령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침>에 따라 소형무기의 수출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억압을 목적으로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할 경우 수출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23] 지난 해 4 월 유엔 총회에서 154 개국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채택된 무기거래조약은 제 7 조에서 각 당사국이 재래식 무기의 수출 이전에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에 사용되거나 이를 조장할지 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한국은 2013 년 6 월에 동 조약에 서명했으며 이제 향후 비준절차를 거치면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이 같은 기준을 현 수출통제제도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정부가 무기 수출을 가치중립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수출된 무기를 가지고 벌어지는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에서 바레인으로 수출된 최루탄은 39 명을 죽이고 나서야 국제적 비난 여론에 부딪혀 수출이 '잠정 중단' 되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단법을 비롯해 한국의 무기수출 관련 법제도를 제대로 손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한국산 무기들이 해외 어딘가에서 시민들을 탄압하는 억압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총단법 개정은 이미 오래 전에 개선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시급한 문제다. 향후 국회 내에서 이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하위법령 제정시에 금일 제안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 더 이상 한국이 압제자들이 사용하게 될 무기를 공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22) EU Common Position on Arms Export Control, 2008/944/CFSP, adopted on 8 December 2008, art 2.

23)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훈령(국방부훈령 제1435호) [별표] 전략물자 수출통제 지침, III. 다자간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지침, p3

#붙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수출허가 심사기준(안)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하 “총포 등”)의수출 관련 허가 심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총포 등이 수입국 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2) 총포 등이 수입국에서 제3국으로 재판매(또는 전용), 재수출되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2. 법 제9조 제5항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명백한 위험”에 판단은 다음을 따른다.

“중대한 인권침해” 는 아래의 침해의 중대성과 초래된 고통의 정도, 침해의 규모 및 지속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침해의 중대성과 초래된 피해의 정도: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 고문이나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처하게 하는 행위, 치안군 등이 인권을 침해하여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 사상이나 신념을 근거로 한 구금, 조직적인 차별 행위, 강제노동 등의 노예와 같은 대우를 하는 행위, 주거지나 식수원 등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행위 등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침해의 규모 및 지속성: 당해 인권침해 행위가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보가 존재하는가? 그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이며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한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명백한 위험” 이라 함은 총포 등이 위에서 명시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이나 의심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를 일컫는다. 수출 신청된 총포 등을 수입국 내 최종사용자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총포 등의 수출이 법제9조 제5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수입국의 태도

① 수입국이 핵심 인권협약의 당사국인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지역인권조약, 로마규정 등)
② 수입국이 당사국인 인권협약 상 요구되는 국내법규 채택 등의 이행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③ 수입국이 인권의무의 존중과 증진에 필요한 입법사법행정적 수단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ㄱ) 수입국 정부 및 그 대리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법률과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가?

(ㄴ) 수입국에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사법제도가 갖춰져 있는가?
(ㄷ) 수입국이 치안군이나 경찰 등 법집행공직자(총포 등의 사용주체)를 대상으로 국제인권법 및 그 적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가?

④ 인권의무의 존중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피해자에게 구제와 배상을 제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기관이 설립되었는지 여부
(ㄱ)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독립감시기구나 국가기관이 있는가?
(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이 존재하는가?
(ㄷ) 인권침해의 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제공한다는 기록이 있는가?

⑤ 국제적지역적 인권기구(예를 들어 유엔조약감시기구 및 특별절차)와의 협조의 정도

⑥ 수입국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독립적 조사나 모니터링에 동의하였는가? 그 경우 조사결과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떤 권고사항을 이행하였는가?)

나) 수출되는 총포 등의 특성

① 수출 신청된 종류의 총포 등이 수입국에서 국제인권법이나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침해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② 수출 신청된 종류의 총포 등이 수입국에서 내부 치안 목적으로 의도되어 있는가? 그 경우 수입국에서 해당 종류의 총포 등이 중대한 인권침해, 특히 고문이나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초법적처형, 자의적 구금이나 강제실종 등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존재하는가?

③ 수출 신청된 총포 등의 종류와 질과 양이 명시된 최종사용자의 적법한 군사•치안•경찰 임무수행 목적에 부합되는가?

다) 최종사용자

① 수입국에서 최종사용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가?

② 최종사용자(치안군 등)가 명확하고 책무성이 보장되는 지휘통제계통 내에서 운영되는가?

③ 최종수하인이 수출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당해 총포 등을 이전하면 안 된다는 점을 받아들였는가?

④ 명시된 최종사용자는 해당 총포 등을 적법한 목적 상 필요로 하고 있는가?

⑤ 최종사용자에게 해당 총포 등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할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예를 들어, 해당 총포 등이 법집행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해당 총포 등을 사용할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법집행공무원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책무성 보장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⑥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볼 때 명시된 최종사용자의 행위가 (유엔 조약감시기구, 국가인권기구나 국제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중대한 우려의 대상인 적이 있는가? 그 경우, 수입국 혹은 최종사용자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그러한 침해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기소 등)를 취하였는가?

라) 전용 위험성

① 수입국은 해당 총포 등의 향후 이전에 대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② 수입국이 해당 총포 등을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제3국으로 전용하거나 재이전한 기존의 알려진 사례나 의심 사례가 존재하는가? 이 경우 전용 위험성은 단지 미인가된 사용자(비국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뿐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 총포 등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적법한 사용자(국가기관)를 대상으로 한 전용도 포함된다.

3. 전항의 각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총포 등의 수출 신청이 거부되어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고7_총단법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3. .
발 의 자 : 김현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레인 등 해외에서 한국산 최루탄이 시위진압에 사용되어 바레인에서만 최소 39명이 사망하는 등 한국산 최루탄에 의한 인권침해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국내 외 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최루탄 수출 허용에 대해 항의하였고, 한국 정부는 바레인에 대한 최루탄 수출을 유보한 상태임.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국 내의 공공 안전을 위해서만 수출을 제한 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출된 총포・도검・화약류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기본적 자유의 억압에 쓰이는 경우에도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근거가 없음.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반성으로 더 이상 최루탄은 집회시위 진압에 사용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는 UN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하는 등 자국에서 생산된 무기류가 세계평화와 보편적 인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할 국제적 책무가 있음.

이에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4항).

법률 제 호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때에는”을 “때,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국내외 전쟁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 수입국에서 제3국으로 재판매(또는 전용), 재수출되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또한 같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輸出入의 許可등) ① ~ ③ (생 략) ④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생 략)	제9조(輸出入의 許可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때, 중대한 인권침해 또는 국내외 전쟁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 수입국에서 제3국으로 재판매(또는 전용), 재수출되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또한 같다. ⑤ (현행과 같음)